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위·수탁협약 추진 동의안

의안 번호	2239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 남양주시,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진접선 복선전철의 원활한 개통 및 4호선 운영필수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관계기관간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서로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를 체결함
- 나. 이에 따라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 설치를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코자하며 본 위·수탁협약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편성 및 사업비 부담 등의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 다.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협약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4호선 연장(진접선) : 국토부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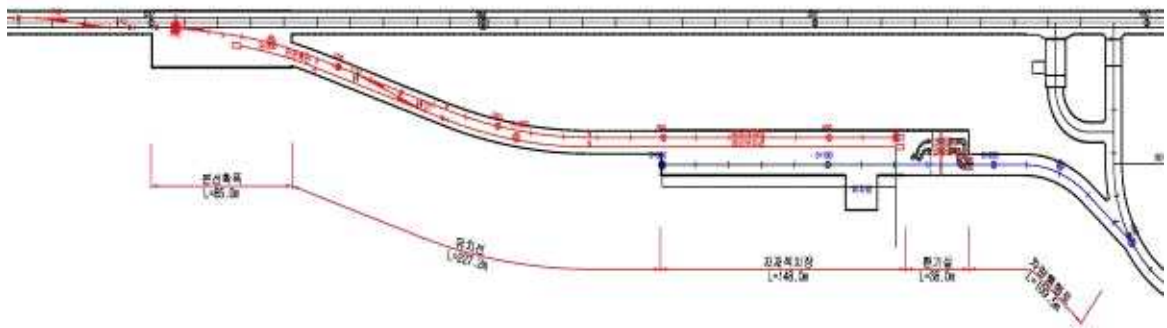
- 구 간 : 노원구 당고개역 ~ 남양주시 진접읍
- 규 모 : 14.8km(서울 2.07, 경기 12.71), 정거장 3개소(경기도)
- 사 업 비 : 9,226억원(국가 75%, 서울시 25%)
- 사업기간 : 2015~2021년('21.12월 개통 예정)

【진접차량기지 건설 : 서울시 시행】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40-4 일원
- 규 모 : 197,400 m^2
- 사 업 비 : 5,335억(서울시)
- 사업기간 : 2015~2025년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 : 서울시 시행】

- 위 치 : 진접선 1공구 경사갱 (남양주시 별내동 산255)
- 규 모 : 비상대피 및 자재유치선 607m(지하), 지상 현업사무실 1동
- 시설 배치도: 옥내시설(비상대피선, 장비유치선 신설 등)



〈운영필수시설 현황〉

- ▶비상대피선 : 장애, 사고차량 등을 견인하여 유치
- ▶특수차 유치선 : 모타카, 레일연마차, 분진흡입차, 자갈흡입차 등
- ▶자재적치장 : 레일, 자갈-콘크리트도상 변경을 위한 자재 등 기타 유지관리자재
- ▶협업사무실 : 특수차 운전원, 유지관리(비상복구) 직원 등 상주 공간

나. 그간 추진경위

- '13.12.19. :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15. 9. :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서 체결
 - 본선 건설: 철도공단, · 차량기지 건설: 서울시, · 운영: 서울교통공사
- '18. 9. :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국토부)

- '19. 2~10. :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 협의(국토부, 서울시, 남양주시 등)
 - 공사는 진접선 본선과 인접시공으로 공단에 위탁 (협약 작성)
- '19.10. :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시→대광위)
- '20. 2~9.23. : 관계기관 협의(국토부, 서울시, 남양주시, 국가철도공단 등)
- '20. 9.29. : 관계기관 합의서 체결
 - 합의기관 : 국토부, 서울시, 남양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 진접선 개통 및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추진
- '20.10.~'21. 1. : 주민 민원대책 및 위·수탁 협약(안) 협의(남양주시, 철도공단 등)
- '21. 1.~ : 운영필수시설 이전 관련 시의회 사전 보고

다. 사업추진체계

- (위·수탁사업) 진접선 본선과 인접시공으로 국가철도공단에 위탁 시행
 - 서울시-국가철도공단간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서 체결

라. 소요사업비

- 소요사업비 : 총 791억원
 - 소요 사업비는 설계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주요 협약내용

- 협약개요
 - 협약서명 : 서울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서
 - 협 약 자 : 서울특별시(위탁기관) - 국가철도공사(수탁기관)
 - 협약목적 :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이 목적

○ 주요내용

-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 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하며, 소요비용은 서울시가 부담
- (사업위치) 공사의 위치는 진접선 본선터널에서 분기하여 경사갱 방향 전환소까지 독립터널을 연결하고 경사갱 외부에 주채소 설치
- (수탁사업 범위 및 규모) 본선터널 확폭부 및 유치선 터널 607m, 궤도 작업장 1,410 m^2 , 터널외 시설: 자재적치장 및 주채소(설계) 1,700 m^2
- (업무분담) 공사에 따른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으며, 서울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처리
 1. 서울시의 업무
 - 사업비 전액 부담(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 공사시행에 따른 인·허가처리 및 민원 처리 협조
 2. 공단의 업무
 - 설계 및 공사시행
 - 준공 및 인수·인계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 작성
-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은 설계결과, 공정율에 따라 협의 조정
- (시설의 취득, 유지관리) 준공 또는 사용개시와 동시에 인계인수하며, 이후 유지관리는 서울시가 시행
- (사업비 정산) 공사완료 후 6개월 이내 사업비 집행결과 및 수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정산

○ 협약기간 :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사업 완료까지 유효

단,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로부터 효력발생

○ 향후일정 : '21. 2. 위·수탁 협약 체결(市-국가철도공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제24조, 국가철도공단법 7조

○ 도시철도법

- 제24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기계·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나. 예산조치 : 21년 추경예산 편성

다. 첨부자료 : 합의서 1부.

붙임 1. 서울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 합의서('20.09.29.) 1부.

2. 서울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 위수탁협약서(안) 1부. 끝.

※ 작성자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최연섭 (☎2133-2238)

- 서울 지하철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 -
위·수탁 협약서

2021. 2. .

서울특별시

국가철도공단

서울 지하철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서울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공사”라 한다)의 목적, 범위, 기간, 사업비 등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이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공단” 상호간의 사업범위, 사업비부담, 사업시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 시행 및 사업비 부담) ① “이 공사”는 “공단”의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관련 수탁업무관리지침」(이하 “수탁업무관리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② “서울시”는 제8조제1항에 의거 사업비를 예납하고, “공단”은 사업비를 예납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한다.

제3조(사업위치 및 사업기간) ① “이 공사”의 시행 위치는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사” 구간 중 본선터널 2km800에서 분기하여 경사갱 방향전환소까지 독립터널을 연결하는 것으로 하고, 경사갱 외부에 주재소를 설치토록 한다.

- ② 사업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부터 공사 완료일까지로 하고, “서울시”는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종합시험운행 예정 일정을 감안하여 모든 인·허가를 완료토록 한다.

제4조(수탁사업의 범위 및 규모) “이 공사”의 수탁범위 및 규모는 서울시 요청 공문(서울시 교통정책과-6563, 2019.04.12.)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범위에 관하여 “서울시”와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본선터널 확폭부 및 유치선터널 607m, 궤도작업장 1,410m²
2. 터널 외 시설 : 자재적치장 및 주재소(설계) 1,700m²

제5조(업무분담) “이 공사”에 따른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울시”와 “공단”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1. “서울시”의 업무

- 가. 사업비 전액 부담
- 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사업계획 등 각종 인허가 처리
- 다.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 라. 공사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처리 협조
- 마.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 처리 협조
- 바. 시설물 인수·인계와 동시에 시설물 귀속 및 유지 관리

2. “공단”의 업무

- 가. 설계 및 공사시행
- 나. 공사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처리
- 다.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 처리
- 라. 준공 및 인수·인계에 필요한 각종도서 및 자료 작성

제6조(철도시설기준 및 공사시행절차) “공단”은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건설규칙」,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등의 관련법령과 “수탁업무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책정 및 조정) ① “이 공사”의 총사업비는 추정사업비 780억원(사업관리비 별도)으로 하되, “공단”에서 시행하는 설계 결과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종 총사업비를 확정한다.

② 수탁사업 시행 중 실시설계결과 및 물가상승,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단”과 “서울시”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비를 변경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제1항과는 별도로 “수탁업무관리지침”에 의거 수탁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비(부가가치세 별도 계상)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연차별 투자계획) ① “서울시”와 “공단”은 상호 협의하여 연차별 투자계획(붙임1)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021년도 투자계획과 납부는 별도 협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실시설계 결과, 공정을 및 제7조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납부) ① “공단”은 매년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 납부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서울시”로 통보한다. 단, 2021년 사업비는 별도 협의한다.

② “서울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그 내용(예산 배정서 첨부)을 “공단”에 사전 통지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를 납부한다.

-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 추진을 유보할 수 있다.
- ④ “공단”은 당해 연도 예산집행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취득, 유지관리) ① 공사를 완료한 후 “이 공사”에 따라 추가로 설치된 시설(용지포함)은 동 시설을 관리할 “서울시”가 취득한다.

- ② “공단”은 공사 준공 전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정당한 시정요구 등이 있을 때는 이를 반영 조치한 후 준공하여야 한다.
- ③ “이 공사”에 따른 토지 및 시설물은 공사 준공 또는 사용개시와 동시에 “공단”은 “서울시”에 인계인수 하며, 이후 유지·관리는 “서울시”에서 시행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등) ① 본 협약사항 중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공단”의 서면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및 “공단”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협의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서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와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사업비의 정산) ① 사업비는 “이 공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결과 및 “수탁업무관리지침”에 따라 정산한다.

- ② “이 공사”의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하는 이자는 정산하지 아니하

며, 사업비 최종 집행 이후의 잔액에 대하여 최종 집행일부터 정산 시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단” 입금통장 이율로 산정하여 정산한다.

제14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관련 법령 해석에 의하거나 상호협약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60일 이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나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5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서울시”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등의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서울시” 또는 “공단”이 관계법령 및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서울시”와 “공단”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공단”은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서울시”와 “공단”이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입증을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서울시”와 “공단”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1. 2.

서울특별시

시장 (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인)

[붙임 1]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21년	'22년	'23년 이후	
합 계	79,130	33,828	38,302	7,000	
<총사업비>	77,972	32,670	38,302	7,000	
○ 보상비	2,700	2,700	-	-	서울시 직접 시행
○ 공사비	67,900	25,800	35,399	6,701	공단 시행
- 노반	55,000	22,600	29,299	3,101	
- 궤도	2,100	600	500	1,000	
- 설비	1,900	200	1,400	300	
- 전력	3,400	700	1,700	1,000	
- 신호	3,500	1,500	1,000	1,000	
- 통신	2,000	200	1,500	300	
○ 시설부대경비	7,372	4,170	2,903	299	
- 설계비	2,228	2,228	-	-	
- 감리비	4,924	1,900	2,783	241	
- 부대비	220	42	120	58	
<사업관리비>	1,158	1,158	-	-	공단 시행
○ 수탁사업 관리비	1,158	1,158	-	-	총사업비(보상비 제외) x 1.538